

# 강사 인사규정

제정 2019.08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65조의2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3항에 의한 “강사”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“강사”라 함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.

## 제2장 임 용

**제3조 (자격)** ① 강사의 자격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.

② 강사는 연령이 65세를 초과한 자도 임용할 수 있다.

**제4조 (임용시기)**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**제5조 (임용절차)**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② 강사의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「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
**제6조 (임용기간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제4조의 학사운영상 임용일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학기말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
2.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·사망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
③ 강사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 등을 포함하여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, 그 3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 절차에 따른다. 다만, 3년 초과자에 대하여 학사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과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.

④ 1년 이상의 연구년, 휴직,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,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재임용 제외조건으로서 연구년 종료, 휴직자 복직, 보직 종료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.

**제7조 (계약내용)**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.

1. 임용기간
2. 임금 및 강의시간(방학기간을 포함)

3. 복무 등 근무조건
4. 면직사유
5. 재임용 요건 및 절차
6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 (결격사유)**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
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.

**제9조 (임용취소)** 총장은 임용이 예정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
3.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부(과)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4.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

**제10조 (당연퇴직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
1.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된 자
2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

**제11조 (면직사유)**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을 할 수 있다.

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2.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  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4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  5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  6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  7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  8.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·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
  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
  10. 사립학교법 제58조의2(직위의 해제)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
- ② 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 할 수 있다.

1. 소속 학부(과) 또는 학사조직이 폐지되는 경우
2.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3. 신입생이 없는 경우
4.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근무태도 불량으로 소관 학장, 학사부총장 및 교무처장으로부터 서

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
가. 본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우

나. 수업 및 휴·보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
다.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

5.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
③ 강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### 제3장 재임용

**제12조 (재임용)**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<별표 1>의 서식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.

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<별표 2>호 서식 강사재임용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강사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재임용심사위원회 구성, 재임용 심사 및 재임용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
④ 제3항에 따른 강사의 재임용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·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그 사실을 <별표 3>의 서식으로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 한다. 이 경우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.

**제13조 (재임용 탈락 시 소명)**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.

③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.

**제14조 (재임용 거부)**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

**제15조 (의무)**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.

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) 작성 및 준수
2. “1호”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, 평가 및 성적 제출
3.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
4.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: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,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,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

**제16조 (소속)**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부(과)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7조 (교수시간)** ①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.

②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계약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교수시간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에 한한다.

**제18조 (복무)** ①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, 교내·외 활동에 있어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② 강사가 본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강사의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2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타 대학 전임교원이 본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강사로 본다.

**제19조 (처우)** ① 강사의 임금은 본 대학 강의료 산정기준 및 임금계약으로 정한다.

② 사회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**제20조 (휴직)** ① 강사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출산휴가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21조 (휴직기간의 만료 등)**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.

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휴직교원에 대한 처우)**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**제23조 (적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「교원인사규정」 등을 준용하며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부터 신규 임용자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 시행과 함께 「외래교수위촉 및 강사료지급 규정」 중 외래교수에 대한 내용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②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위촉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되며,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<별표 1> 강사 임용기간만료 통지서

## 강 사 임 용 기 간 만 료 통 지 서

- 소 속 :
- 교 번 :
- 성 명 :
- 임용기간 만료일자 : 20 . . . . .

강사님의 임용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만료됨을 통지하오니, 본 대학 강사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기간 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임용 심의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 . .

우 송 대 학 교 총 장

<별표 1-1> 강사 기간만료 통지서 수령 확인증

## 강사 임용기간 만료통지서 수령 확인증

- 소 속 :
- 교 번 :
- 성 명 :

상기 본인은 강사 임용기간 만료통지서를 아래와 같은 일자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· 수령일 : 20   년   월   일

위 수령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우송대학교총장 귀하

※강사 재임용 통지 또는 재임용 탈락 통지 등에도 본 수령증을 준용하여 사용함



<별표 3> 강사 재임용 통지서

## 강 사 재 임 용 통 지 서

- 소 속 :
- 교 번 :
- 성 명 :

귀하는 20   년   월   일자로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
본 대학 강사인사규정 제12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재임용이 결정되  
었음을 통지합니다. 계약체결 일정 등에 대하여는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  
다.

20   .   .   .

우 송 대 학 교 총 장

<별표 3-1> 강사 재임용 탈락 통지서

## 강사 재임용 거부 통지서

○ 소 속 :

○ 교 번 :

○ 성 명 :

○ 생년월일 :

○ 재임용 거부 사유 :

상기와 같이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합니다.

아울러, 본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재임용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우 송 대 학 교 총 장